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6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곽규택
구자근 · 이상휘 · 정동만
박수영 · 이종배 · 유용원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1조의6제5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두 충족하는 자”를 “충족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를 “사업자로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신고기한 2개월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자다.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 받은 자

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닌 사업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 ④ (생략)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u>모두 충족하는 자</u> 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u>충족하는 자</u> ----- ----- ----- ----- ----- -----.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u>사업자</u>	1. ----- ----- <u>사업자</u> 로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u>사업자</u>	2.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u>자</u>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u>기업</u> <u>나. 신고기한 2개월 전까지</u> <u>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u> <u>여 신고한 자</u> <u>다.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u> <u>실신고확인 결과 적정한</u> <u>것으로 확인받은 자</u> <u>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u> <u>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u> <u>「법인세법」 제13조에 따</u> <u>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u> <u>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u> <u>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u> <u>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u> <u>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u> <u>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u> <u>0 이상이 아닌 사업자</u>
--	--